

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49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9. 21.

발 의 자 : 이수진 · 전진숙 · 정춘생
민병덕 · 김 윤 · 이광희
서미화 · 전종덕 · 이주희
주철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,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가 운영되고 있음. 성평등가족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가족센터 221개소의 총 이용 실적은 1,085만 3,193명으로 2021년 대비 약 2배 증가하였음.

이처럼 가족센터의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, 인구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하나의 센터에 이용 수요가 집중되어 대기시간 증가, 프로그램 운영 축소 등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거나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.

이에 인구·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2개 이상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

함으로써 지역별 이용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리적 접근성을
높여 건강한 가정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려는
것임(안 제35조제1항 후단 신설).

법률 제 호

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건강가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인구·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, 각 센터의 관할 구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5조(건강가정지원센터) ①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 제의 예방·상담 및 치료, 건강 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의 개발, 가족문화운동의 전개,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 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 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 운영하여야 한다. <후단 신설>	제35조(건강가정지원센터) ① 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. 이 경우 인구</u> <u>·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</u> <u>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</u> <u>단체는 2개 이상의 센터를 설</u> <u>치·운영할 수 있으며, 각 센터</u> <u>의 관할 구역은 해당 지방자치</u> <u>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</u>
② ~ ⑥ (생 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